

이감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3 제2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9쪽

사림의 양명학 배경과 문묘 배향 문제

지문 평가

딱히 어려운 글은 아니다. 이 지문은 동양 철학을 다룬 것이라기보다 역사적 사안을 다룬 것이므로 지문에 등장하는 각 주체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양명학을 바라본 '사림'의 입장은 연계의 측면에서 가치가 있으나(나)의 마지막 문단에 방점을 두고 읽어 두자.

키워드

(가) 인문 - 동양 철학 - 퇴계의 양명학 배경

주자학, 사림, 양명학, 전습록, 퇴계 이황, 전습록논변, 불교, 심즉리, 성즉리, 도학, 주자의 도통론

(나) 인문 - 동양 철학 - 명의 문묘 배향 요구

문묘, 배향, 양명학, 명나라, 선조 34년, 퇴계, 도통, 심학수, 허성, 숙종 대

(가) 문단 1 주자학과 양명학

1) 16세기는 **주자학**을 바로 세워서 사회 혼란을 막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였던 유학자들인 **사림(士林)**의 정치 실험이 기묘사화 등을 거치면서 일면 좌절되던 시기였다. 당시 **양명학**이 세력을 얻고 있었던 명나라에서 양명학의 문헌인 **전습록**이 전해지자, 주자학을 보완하는 이론일 수도 있다며 양명학에 대한 관심이 일었다.

▶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로 16세기는 향촌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며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려던 '사림'이 조선 초부터 정치적 실권을 장악해 왔던 훈구파에 밀려 힘이 다소 꺾인 시기이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양명학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명나라를 통해 양명학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관심이 조선 사대부 전반에 일어났다.

※ 주목 다만 이러한 관심은 어디까지나 '주자학'을 보완하기 위함이지, 주자학 대신에 양명학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즉 조선의 '사림'에게는 여전히 '주자학'이 중심이었던 것이다. 훈구파가 주자학 이외의 사상에 비교적 관대했던 것에 비해 '사림'은 주자학 이외의 사상을 배격하는 경향이 강했다.

2) 그러나 **퇴계 이황**이 **전습록논변**을 통해 그 시비를 가려서 내침에 따라 '사림'은 양명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격하는 방향으로 일변하였다.

◎ 맥락 읽기 첫 문단에서는 항상 글의 초점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6세기에 전해진 양명학에 대한 관심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었다. '전습록논변'을 기점으로 '양명학을 배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양명학을 이단으로 간주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가)의 초점으로 삼아야겠다.

(가) 문단 2 양명학 배격의 이유

1) 퇴계가 양명학 배격에 앞장선 것은 사회를 겪으면서도 향촌 사회에서의 기반을 조금씩 넓혀서 학계와 정계를 장악해 가던, '사림' 주도의 주자학적 정치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특히 문정 왕후의 후원에 따라 **불교**가 중흥의 움직임 을 보이던 터라 위험성이 더 부각되었다.

▶ 양명학 배격의 이유다. '사림'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정치적 이유에서 양명학을 배격한 것이다.

※ 참고 평소 불교를 억눌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자학에서만 명분을 찾으려 했던 '사림'의 입장에서 불교와 가까워 보이는 사상이 퍼질 경우에 자신들의 정치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더욱이 '사림'의 거두인 퇴계가 양명학을 이단으로 규정하자, 양명학은 주자학을 '보완'할 수 있는 학문 이 아닌, 문제적인 사상이라는 인식이 '사림' 사이에서 굳어졌다.

2) 퇴계는 인간의 본성에 만물의 이치가 내재해 있다는 주자학의 **성즉리** 개념 대신에, 양명학이 **심즉리** 개념을 내세운다는 점을 경계하였다. '심즉리'는 마음이 곧 이치임을 뜻하는 것으로, 퇴계의 입장에서 이는 순간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의 선학(禪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려 멸망의 원인을 **숭불(崇佛)**[→ 불교의 숭상]에서 찾고, 조선 건국의 명분을 주자학에서 찾았던 퇴계를 비롯한 '사림'에게 양명학의 성행은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였던 것이다.

※ 주목 '사림'이 양명학을 문제적인 사상으로 규정한 학문적 근거이다. 양명학이 내세운 '심즉리'를 주자학의 '성즉리'와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한데, 지문의 설명만으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지문 자체가 동양 철학을 심층적으로 다룬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두 표현이 구분되는 별개의 표현이라는 점만, 확실하게 챙겨 두자.

성즉리	심즉리
본성에 이치가 '내재'되어 있음	마음이 '곧' 이치

▶ 퇴계는 '마음=이치'로 보면 '순간적인 깨달음'을 지향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면에서 '불교'와 다르지 않다[→ 불교도 순간적인 깨달음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 참고 '사림'은 순간적인 깨달음만을 중시할 경우, 참선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깨우침을 찾는 것만을 강조하게 되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여긴다. '사림'은 양명학의 성행이 '사림'의 정치적 기반을 약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학문적 근거를 '심즉리'의 강조 등에서 찾은 것이다.

(가) 문단 3 주자의 도통론

퇴계는 논쟁을 통해 양명학의 오류를 밝히며 **도학**으로서의 주자학 정통을 강조하였다. **도학**이란 **성인(聖人)**의 가르침인 '도(道)'에 관한 학문으로, 사실상 **공자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그는 주자의 도통론을 통해 양명학 배격을 분명히 하였다. '도'의 계보인 도통을 다루는 **주자의 도통론**은, 현실의 군주가 도통을 따라 도학을 전수받은 유학자들과 함께 통치해야 그 통치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학문이다. 퇴계는 도통이 공자와 맹자, 주자를 비롯한 송나라 유학자들에 이어, 조선 '사림'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양명학을 도통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의 양명학 배격은 결국 주자학 정통을 앞세우면서 '사림' 주도로 조선에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 '주자의 도통론'은 공자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의 계보를 다루는 학문이다. 후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 계보가 송나라의 유학자들, 특히 주자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퇴계를 중심으로 한 '사림'은 주자학과 양명학의 학문적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주자의 도통론'으로 볼 때 양명학은 도통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주자학'과 주자학을 내세운 '사림'은 옳고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명학은 그러하지 않 다며, 도학의 정통성을 규정했다.

(나) 문단 1 문묘 제도의 개정 요구

‘사림’에 전래되고 논의되던 양명학이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명나라**가 조선에 문묘 제도의 개정을 요구한 **선조 34년(1601)**의 일이었다. **문묘**는 유교의 성인인 공자를 모시고 기리는 사당으로, 문묘에 학덕이 높은 또 다른 인물을 모시는 일인 **배향** 등과 관련하여 명나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는 공자의 신위에 대한 칭호를 명나라에 맞춰 고쳐 사용해 달라는 요구였고, 둘째는 공자의 아버지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들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계속 이어졌으나, **마지막 요구**에 대해서는 논란이 빚어져 왔다. 마지막 요구는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인을 명나라에서 배향하고 있으니 조선에서도 따르라는 것이었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가)의 내용을 전제로 삼아 (나)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림’은 ‘양명학’을 배격해 왔는데 명나라에서는 양명학이 세력을 얻고 있었다. 결국 명나라에서 왕수인을 배향하라는 요구를 해 왔고 그 요구에 어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다. 그에 대한 ‘사림’의 대응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곧 (나)의 초점이다.

(나) 문단 2 조정의 대응

1) **퇴계**를 우러르는 ‘사림’은 그가 제시한 **도통**을 강조하며 주자학만이 바른 학문이고 다른 것은 **이단**이라 규정하였으니 왕수인에 대한 배향은 허용할 수 없었다.

▶ ‘사림’의 기본적인 입장은 ‘양명학 배격’에 있었다(가)의 문단].

2) 다만 명나라의 공식적인 요구인 만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였다. 명나라에 자문을 보내어 왕수인에 대한 배향처럼 도학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사안뿐 아니라 공자 신위의 칭호까지도 고증을 한 후 그 이유를 따지고 시간을 들여 신중히 접근하자는 **심취수**의 주장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 준다.

▶ ‘신중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당장 들어줄 수 없으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사안 들어 줄 명분을 찾아 보자는 주장에 가깝다.

3) **허성**은 조선을 명나라와 같은 지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여기며, 명나라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그 뜻을 실현하자고 주장하였다.

▶ 현실을 고려한 ‘찬성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만 상당히 독특하다. 단순한 찬성론 내지 수용론인 것이 아니라, 조선의 지위를 높이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다. 조선 역시 명나라가 주장하는 도통에 따라 배향하는 나라임을 강조하여, 국제 사회에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명나라와 ‘대등한’ 지위를 지닌 나라로 규정받자는 것이다. 이는 당시로서 조금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 법한 주장이다.

4) 아울러 그는 퇴계를 비롯한 조선의 성인들도 배향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주자를 거쳐 ‘사림’으로 이어지는 도통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주목 ‘허성’은 더 나아가, 명나라의 요구와는 별개로 ‘조선의 성인들’도 배향하자고 주장하면서 주자의 도통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가)의 문단3-1]. 참고로 원래 ‘사림’은 도통에 따라 조선의 성인들도 배향하자는 주장을 해 왔는데, 허성은 조선의 지위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연장선에서 이를 한 번 더 제기한 것이다. ‘사림’이 조선의 성인들(→ 사대부인 성인들)을 배향하고자 주장해 온 것은 왕권에 대항하여 신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 왕들은 이에 대해 잘 수용하지 않으려 하였다.

(나) 문단 3 배향 문제의 어려움

그런데 신중론이나 찬성론을 제기한 이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이들 역시 **양명학의 이단성**에 대해 인정해 왔던 터라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결국 왕수인에 대한 배향 문제는 퇴계의 양명학 배격에 근거하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의가 이어졌다.

▶ 기본적으로는 ‘양명학 배격’을 내세웠기 때문에 쉽게 명나라의 요구에 답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조정에서 이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결론 없던 시간만 끄는 결과를 낳았다.

(나) 문단 4 마무리

1) 조선의 조정에서 왕수인에 대한 배향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사림’의 반대가 이어졌으며, 주자의 도통론에 근거해 볼 때 왕수인을 배향하고 있는 명나라 조정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인식**까지 퍼져 나갔다.

▶ (나)의 문단3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그리고 이 논의는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된 **숙종 대**에까지 이어졌는데, 더 이상 명나라의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도 논의가 이어진 배경에는 이단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통해 주자학 정통을 강화하려는 ‘사림’의 의도가 있었다. 이 시기에 주자를 절대화하는 **그릇된 경향**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보아, 주자의 주석에 수정을 가했던 양명학은 주자학의 우월함을 보여 주는 측면에서 존재 가치가 여전히 컸던 것이다.

☞ 주목 ‘명나라의 요구’에 더 이상 답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이러한 논의가 이어진 것은, ‘양명학’을 비판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유용했기 때문이다. 주자학 정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자학의 이단’으로서의 양명학을 비판한 것이다.

▶ 쉽게 말해서 ‘이단을 배격함으로써, 주자학의 ‘정통성’을 더더욱 내세울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결국 ‘사림’의 정치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양명학’에 대한 배격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양명학을 배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도학의 기준에 따라 **정치적** 반대자들을 교리에 어긋난 이들로인 사문난적으로 규정하여 제거했던 것은 그 어두운 단면이다.

▶ 이렇게 악용되기도 하였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ㄱ. 어느 나라든 **배향**의 기준은 올바른 학행과 깊은 조예에 있습니다. 조선의 지위를 명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라도 명나라의 요구를 따르면서 **조선으로 도통이 이어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허성의 찬성론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나)의 문단2-3)’. ‘조선으로 도통이 이어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명나라의 요구와는 별개로 ‘조선의 성인들’도 함께 배향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2) ㄴ. **양명학**이 주자학의 도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명나라 문묘에서의 의례나 칭호, 그리고 배향에서 올려야 할 현인(賢人)이 몇인가를 철저히 고증하여 오게 한 후 그에 따라 **신중**

하게 시행하는 것이 주자의 도에 비추어 적절하겠습니다.

▶ 명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심희수'의 신중론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나)의 문단2-2].

∴ ②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심희수는 왕수인의 배향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닌, '공자 신위'에 대한 요구까지도 신중히 그 이유를 따져 보자고 했지만, 이는 공자를 갖추기 위한 것에 가깝다. 그는 공자 신위에 대한 새 칭호가 '도학'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심희수를 비롯한 '사람'은 공자 신위에 대한 칭호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논의했다[(나)의 문단1]. 명나라의 세 요구 중 두 가지는 '도학'으로 보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이 인정하는 '주자의 도통론'은 공자의 정통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3) 오로지 마음에서만 이치 [→ 심즉리]를 찾으며 주자의 이론이 마음 밖으로만 달린다고 반박하니, 그러한 주장은 선학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는 감히 방자하게도 문묘의 성인들이 마련한 정론을 배격하여 얻은 마음의 병통이라 하겠습니다.

▶ 양명학의 '심즉리'를 순간적인 깨달음과 연결하여 비판한다는 점에서[(가)의 문단2-2], 이는 양명학의 이단성을 인정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입장에 부합한다[(나)의 문단3].



[10~13] 과학

양자 얽힘과 벨 부등식

지문 평가

'벨 부등식'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양자 역학'의 미시 세계에 대한 해석에 대한 타당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글의 초점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에 내용을 재구성해 가며 읽어 보자.

키워드

과학 - 물리 - 양자 얽힘

양자 역학, 아인슈타인과 동료들, EPR 논문, 양자 얽힘, 스핀 상관성, 국소성의 원리, 특수 상대성의 원리, 비국소성, 벨 부등식

문단 1 양자 역학과 EPR 논문의 입장 차이

1) 미시 세계의 현상들은 불가사의해서 우리의 상식이나 고전 역학적 원리에 따라 이해하려 할 때에 수용되기 힘들다. 가령 입자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중첩되어 불확정적인 양상을 띠다가 관찰에 의해 한 상태로 결정된다는 양자 역학의 설명은 상식에 비추어 기이하다.

▶ '입자의 상태'에 대한 양자 역학의 설명이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특정 입자의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한다면, 이는 관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 입자의 상태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은 'EPR 논문'을 통해 양자 역학이 입자의 상태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론 체계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백락 짚기 양자 역학의 관점과 대비되는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의 관점이 주어졌으므로, 이 둘을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첫 문단에서 제기되는 '관점 혹은 개념들 간의 구분'은 특히나 중요하다.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자 역학	아인슈타인과 동료들
입자의 상태는 불확정적 ⇒ 관찰에 의해 확정 [→ 예측 불가능]	입자의 상태는 확정적 ⇒ 예측 가능

▶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은 입자의 상태를 예측하지 못하는 [→ 입자의 상태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양자 역학'은 그 이론 체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양자 역학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입자의 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 불확정적이라는] 주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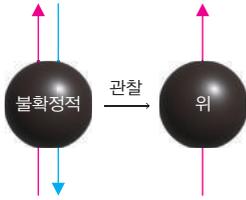
문단 2 양자 얽힘에 대한 해석

1) EPR 논문에 따르면 두 입자가 강한 상관성으로 얽힌 상태인 '양자 얽힘'에 대해서도 양자 역학은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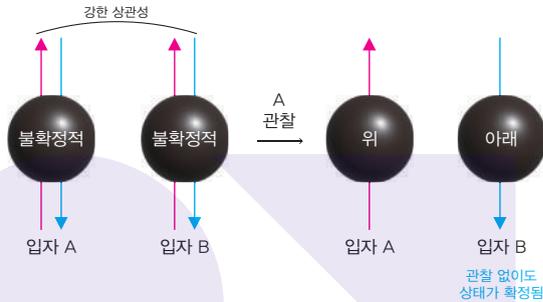
Ⓞ 백락 짚기 글의 초점이 좁혀지는 대목이다. '입자의 상태' 중에서도 '양자 얽힘'에 한정하여, '양자 역학'과 '아인슈타인과 동료들' 두 관점을 구분하여 살펴볼겠다는 얘기가.

2) 입자에서 **스핀**이 '위'인 상태와 '아래'인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할 때,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두 입자 중 하나를 관찰하여 스핀이 '위'로 결정되면 다른 입자는 **상관성**에 따라 즉각적으로 '아래'로 결정된다. 이때 관찰한 입자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리 알 수 없다.

▶ '양자 얽힘'에 대한 설명이다. 입자의 상태에 대한 **앞선 설명**을 참고했을 때 [문단-1], 입자의 상태를 '스핀'으로 대응하여 이해하면 된다. 특정 입자의 스핀은 '위, 아래'가 중첩되어 있어서 '불확정적'이다. 해당 입자를 '관찰'할 때 비로소 스핀이 '위, 아래' 중 하나로 확정된다는 얘기가.



*** 주목 그런데 '양자 얽힘'은 개별 입자를 넘어서, 두 입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입자 A, B가 있을 때 이 둘이 '강한 상관성'으로 얽혀 있다면, A의 상태가 결정될 때 B의 상태도 즉각적으로 결정된다. '양자 역학'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그렇다는 얘기가.



3) 이는 두 입자를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았을 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떨어져 있는 두 입자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EPR 논문은 어떤 정보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는 **특수 상대성의 원리**에 따라 국소성의 원리가 뒷받침된다고 보고, 양자 얽힘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숨은 변수를 찾아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 **비국소성**이 나타나곤 한다고 본다.

▶ '양자 얽힘'의 핵심은 입자 A의 상태가 확정됨에 따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입자 B의 상태도 '즉각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PR 논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것이다.

- 1) '양자 얽힘'상태에 있는 두 입자 A와 B 중 B는 실제로 A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A를 관찰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2) 양자 역학은 '양자 얽힘'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만 말한다.
- 3) 그런데 이는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 원리에 위배되는 현상은 '특수 상대성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입자의 상태에 대한 '양자 역학'의 설명은 불완전하다.
- 4)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양자 얽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숨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 주목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은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비국소성을 용인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양자 역학이 불완전하다고 보지만, 양자 역학은 오히려 '비국소성'을 용인한다. 적어도 미시 세계에서는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사례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단 3 벨 부등식 (1)

1) 양자 역학과 EPR 논문 중 무엇이 타당한지를 실험적으로 밝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 **벨 부등식**이다. 이는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 없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 상황에서서의 여러 관측 결과를 적당히 곱하거나 더한 값이, 항상 어떤 범위에만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부등식이다.

▶ 그래서 과연 두 관점 중에서 무엇이 타당한지를 따져 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벨 부등식'이다. 적절한 벨 부등식을 만들고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면 두 관점 중 무엇이 타당한지를 알 수 있다.

☞ 맥락 짚기 '양자 얽힘'에서와 같이 입자 A, B가 강한 상관성으로 얽혀 있을 때, 벨 부등식의 값이 '특정 범위' 안에만 있다면 비국소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특정 범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면 비국소성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관점을 구분하여 이해해 두자.

아인슈타인과 동료들	양자역학
벨부등식의 값이 '특정 범위' 안에 있음 ⇒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 × ⇒ 양자역학은 불완전함	벨 부등식의 값이 '특정 범위' 안에 있지 않음 ⇒ 비국소성이 나타남 ⇒ 양자역학은 완전함

2) 갑과 을은 앞면에 +1이, 뒷면에 -1이 적힌 종이를 마련한 후, 이 종이의 상관성에 따라 앞면에 -1이, 뒷면에 +1이 적힌 종이도 마련했다고 하자. 두 종이 중 갑이 전자를, 을이 후자를 가진 채 멀리 떨어져서 정해진 시각에 숫자를 읽는 실험을 했을 때, 앞면을 본 갑은 그 즉시 을이 앞면을 보았다면 -1, 뒷면을 보았다면 +1을 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두 종이 반대로 적혀 있다는 상관성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맥락 짚기 벨 부등식을 만드는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어디까지나 예시의 목적은 주어진 '벨 부등식'의 초점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즉 그 값이 '특정 범위' 안에 있는지[→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양자 역학이 옳은지]만 따지면 된다. 갑과 을은 종이를 같이 만들었으므로, 두 종이에 어떤 상관성에 따라 숫자가 적혀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숫자가 종이에 미리 적혀 있을 때에는 상대의 종이에 적혀 있는 숫자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입자 A : 앞면에 +1이, 뒷면에 -1이 적힌 종이
- 입자 B : 앞면에 -1이, 뒷면에 +1이 적힌 종이
- 강한 상관성 : 두 종이의 값들은 반대로 적혀 있음.

문단 4 벨 부등식 (2)

1) '갑이 지닌 종이의 앞면 숫자'를 '갑앞'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때, '갑앞(을뒤-을앞)+갑뒤(을뒤+을앞)'을 계산한 값인 'M'은 2이다.

☞ 맥락 짚기 이 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단3의 상황에 맞추어 계산하면 벨 부등식의 값인 M이 2라는 결론만 행기면 된다. 사실 이 식을 잘 보면 을이 지닌 종이의 앞뒤를 한 번은 빼고, 또 한 번은 더한다. 그러니 어떤 상관성이든 미리 적어 둔다면 '+'로 연결된 두 항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0이 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상관성의 내용을 바꾸어서 갑이 지닌 종이의 앞뒷면에 모두 +1, 을이 지닌 종이의 앞뒷면에 모두 -1을 적는다면 M은 -2이다.

▶ 만약 상관성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M의 값도 달라진다. 즉 M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상관성의 내용에 의해, 두 종이의 앞뒷면에 적히는 값들이다.

3) 종이에 미리 숫자가 적혀 있을 때 그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즉 M이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상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2 ≤ M ≤ 2'는 가장 단순한 벨 부등식의 한 예시이다.

▶ 종이에 미리 숫자가 적혀 있다면 → EPR 논문의 주장처럼, 입자의 상태가 관찰과 무관하게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벨 부등식의 값은 반드시 특정 범위 안 [→ -2 ≤ M ≤ 2]에만 있다[문단3-1]. 상관성의 내용이 무엇이든,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값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 주목 즉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의 주장대로 입자의 상태가 확정적이라면 [→ 단지 양자 역학은 '숨은 변수'를 아직 찾지 못하여 입자의 상태가 불확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벨 부등식은 항상 특정 범위 안에 놓이므로,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관건은 과연 '양자 얽힘'에서와 같이 입자의 상태가 불확정적일 때 [→ 관찰하기 전에는 스핀이 '위인지' '아래'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일 때도 M이 반드시 특정 범위 안 [→ -2 ≤ M ≤ 2]에만 있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문단 5 벨 부등식을 통한 양자 역학의 타당성 증명

1) 그런데 실제로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두 전자에서 스핀이 '위'인 것을 +1, '아래'인 것을 -1로 간주할 때에 M이 -2나 2인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상태가 확인되기도 한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음에도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상관성이 정해져 있으나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 주목 중요한 결론이다. 적어도 '스핀'과 같은 미시 세계의 현상에 한해서는 실제로 M이 '특정 범위' 안에만 있지 않는다. 즉 '비국소성'이 나타나곤 하는 것이다[문단2-3].

2) 종이들의 앞뒷면 숫자들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 입자의 상태가 불확정적이고] 감이 앞면을 볼 때에 을이 지닌 종이의 앞뒷면 숫자가 다르고, 감이 뒷면을 볼 때에 을이 지닌 종이의 앞뒷면 숫자가 같다는 내용의 상관성을 따른다면 2보다 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입자의 상태'는 불확정적이라서 [→ 예측될 수 없어서], 상관성의 내용에 따라 벨 부등식의 값이 '특정 범위'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상관성은 있되, 결과가 미리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한 사례이다. 이를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의 주장과 구분하여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다[문단4].

아인슈타인과 동료들	양자역학
입자의 상태는 확정적 ⇨ 상관성의 내용이 무엇이든, 벨 부등식의 값은 '특정 범위' 안에 있음 ⇨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 × ⇨ 양자역학은 불완전함	입자의 상태는 불확정적 ⇨ 상관성의 내용에 따라 벨 부등식의 값이 '특정 범위'의 밖에 있을 수 있음 ⇨ 비국소성이 나타남 ⇨ 양자역학은 완전함

▶ 간단한 벨 부등식의 사례를 통해 상관성이 있으나 결과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국소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결론이 실험을 통해 확인된다면 결국 '양자 역학'의 주장은 옳은 것이 되고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이 된다.

※ 참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숫자들을 적용해 보자. 가령 감의 종이 앞면에는 -1이, 뒷면에는 +1이 적혀 있을 때, 감이 앞면을 보면 을의 종이 앞면에는 +1이, 뒷면에는 -1이 적혀 있고, 감이 뒷면을 보면 을의 종이 앞뒷면에는 모두 +1이 적혀 있다고 하자. 이때 얻어지는 M의 값은 4로 2보다 큰 값이 된다.

$$\begin{aligned}
 & \cdot \text{감}_{\text{앞}} : -1 \quad \begin{cases} \text{을}_{\text{앞}} : +1 \\ \text{을}_{\text{뒤}} : -1 \end{cases} & \cdot \text{감}_{\text{뒤}} : +1 \quad \begin{cases} \text{을}_{\text{앞}} : +1 \\ \text{을}_{\text{뒤}} : +1 \end{cases} \\
 & \cdot \text{감}_{\text{앞}}(\text{을}_{\text{뒤}} - \text{을}_{\text{앞}}) + \text{감}_{\text{뒤}}(\text{을}_{\text{뒤}} + \text{을}_{\text{앞}}) = (-1)((-1) - (+1)) + (+1)(+1 + (+1)) \\
 & = (-1)(-2) + (+1)(+2) \\
 & = +4
 \end{aligned}$$

3) 클라우저, 아스페, 차일링거는 각각 1972년, 1981년, 2015년에 나름의 벨 부등식을 설계하고 미시 세계에 적합하면서 외적인 영향이 배제되는 실험 장치를 고안하여 실험들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들은 모두 EPR 논문이 아니라 양자 역학의 손을 들어 주었다.

▶ 마무리다. 실제 실험에 의해서도 양자 역학이 옳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단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차일링거는 '양자 얽힘' 상태의 두 광자를 검출하여 비국소성을 검증하는 실험에서 EPR 논문을 지지하는 '과학자 집단 K'가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허점들을 극복하고자 했다.

▶ '차일링거'는 '양자 역학'을 지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문단5-3]. 즉 과학자 집단 K가 제기한 허점들을 충분히 막은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도록 설계해야만 자신이 도출한 결론이 여전히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2) (가) 국소성 허점 : 두 입자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한 입자가 다른 입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양자 얽힘은 강한 상관성으로 얽혀 있는 두 입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때 두 입자는 '직접적인 영향' 없이 상관성을 가져야 한다[문단3-1]. 그런데 만약 두 입자가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다면,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상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 주목 이로부터 자유로운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두 입자를 충분히 멀리 떨어트려 두어야 한다. 즉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나) 자유 선택 허점 : 측정에서 실험자가 선택해야 할 측정 방향 등이 무작위적이지 않고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실험 결과가 어떤 '외적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뢰하기 힘들다.

※ 주목 만약 실험 결과가 어떤 '외적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벨 부등식의 값이 '특정 범위'의 밖에 있더라도 [→ 비국소성의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그러한 실험 결과들은 전부 '외적인 작용'에 의한 오류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

▶ 따라서 이로부터 자유로운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향 등이 전부 '무작위적'으로 정해지도록 하여, 외적인 작용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⑥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양자 얽힘과 관련한 상관성은 우리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가령 문단5-2)에서처럼 종이들의 숫자를 미리 정해 놓지 않고 감이 어떤 면을 보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상관성으로 삼는다면, 벨 부등식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이렇듯 상관성이 정해져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신뢰성이 하락할 이유는 없다.

물권의 혼동

지문 평가

전형적인 법학 지문의 구성으로, '혼동'이 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학 지문을 읽을 때에 필요한 요령들을 배울 수 있는 지문이다. 열심히 공부해 두자.

키워드

사회 - 법학 - 물건, 혼동

물권, 소유권,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제한 물건, 혼동, 채무자, 채권자, 저당권, 민법 제191조 제1항, 제191조 제1항의 단서 조항, 지상권

문단 1 물건

1)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일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 한다. 물권의 여러 형태 중에서 완전 물권인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함으로써 누리는 가치인 **사용 가치**와 물건을 처분함으로써 누리는 가치인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달리 **제한 물건**은 물건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중 어느 하나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맥락 짚기 물권을 '완전 물건'→ 소유권과 '제한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 문단에서 주어지는 '구분'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완전 물건[→ 소유권]	제한 물건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중 '하나만' 지배

2)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혼동**이라 하는데,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권리 범위가 일부 중복된**다는 점에서 물권과 관련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 소유권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을 지배하는 제한 물건과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수 있다. 즉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과 제한 물권을 동일인이 갖게 된다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물건과 관련해 '혼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초점이다.

문단 2 물권의 양립

1)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권리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 범위나 보장 순위를 달리해야** 그 물권이 양립할 수 있다.

▶ 애초에 하나의 물건에 대한 두 물권이 '양립'하려면[→ 충돌하지 않으려면] 두 물권의 권리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두 물권의 권리 범위가 중복된다면 권리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데, '혼동'도 그러한 충돌에 해당한다[문단1-2]. 한마디로 '혼동'은 물권이 '양립'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2) 예컨대, **채무자의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목적으로 그와

는 권리 범위가 다른 권리인 **저당권이 채권자**를 위해 설정될 수 있다. 제한 물건 중의 하나인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맡아 놓은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맥락 짚기 '물권의 양립'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예시를 통해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물권이 양립할 수 있는 경우를[→ 권리 범위가 다르거나, 보장 순위가 다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먼저 '권리 범위'가 다른 경우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채무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같은 물건에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저당권'은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제한 물건이다[문단1-1]. 즉 교환 가치, 사용 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채무자의 '소유권'과 권리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

☞ 주목 하나의 물건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물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 물건들의 권리 범위가 일부 중복되더라도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혼동'은 권리 범위가 중복되는 두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문단1-2].

3) 또한 **이미**[→ 선행위] 누군가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 다른 이를 위해 **후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 앞선 예시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물권을 가진 경우였다[문단2-2]. 이번에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두 사람이 '동일한' 물권을 가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보장 순위'가 다르면 혼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두 물권이 양립할 수 있다.

☞ 주목 권리 범위가 다르거나 보장 순위가 다르려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물건이든 '동일한' 물건이든 그것들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즉 두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물권이 양립하지 못해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4) 이와 달리 어떤 물건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이가 그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경우처럼 **물권의 혼동**이 발생할 때에는, 두 개의 물권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민법 제191조 제1항**에 따라 권리 범위가 넓은 소유권만 남기고 **제한 물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 취지는 어느 한 권리를 다른 권리에 흡수시킴으로써 권리 관계를 간명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 동일인에게 귀속되지만 않다면 권리 범위를 달리하든, 보장 순위를 달리하든 하나의 물건에 대한 여러 물권을 '양립'시킬 수 있다.

☞ 주목 그런데 이처럼 '저당권, 소유권'이 모두 동일인에게 귀속된다면 권리 범위를 달리할 수도, 보장 순위를 달리할 수도 없다. 즉 권리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문단1-2].

☞ 맥락 짚기 그래서 '혼동'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권리 범위가 '좁은'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권리 범위가 '넓은' 소유권만을 유지한다면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만 성립하게 된다. 즉 혼동이 해소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혼동'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잘 정리해 두자.

- 문제 상황 : 물권의 혼동
- 문제 원인 : 중복되는 여러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됨
⇨ 물권의 양립 X
- 해결 방안[→ 민법 제191조 제1항] : 권리 범위가 좁은 제한 물건 소멸

문단 3 민법 제191조 제1항의 예외

1) 다만 **제191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물권의 혼동으로 인해 소멸되어야 할 **제한 물건**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물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제한 물권의 소멸이 자칫 **제삼자의 법률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맥락 짚기 법학 지문을 읽을 때에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어떠해야 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어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주목 민법 제191조 제1항을 따른 해결 방안이 '원칙'이라면, 그 단서 조항에 따른 다른 해결 방안은 '예외'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두자.

- 문제 상황 : 물권의 혼동
- 문제 원인 : 중복되는 여러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됨
⇒ 물권의 양립 ×
- 해결방안[→ 민법 제191조 제1항] : 권리범위가 좁은 제한물권 소멸
- 예외[→ 단서 조항] : 소멸되어야 하는 권리가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멸 ×

2) 가령, A가 B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C가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이후에 A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자.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등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다. 본래 지상권에 의거해 생긴 공작물이나 수목은 지상권자의 소유가 되므로 토지와 별개로 지상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 맥락 짚기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단서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즉 소멸되어야 하는 권리가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로 주어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유권 : B → A
- 토지의 지상권[→ 제한물권] : A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C

➡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물건[→ 토지]에 대한 서로 다른 물권[→ 소유권, 지상권]이 양립하는 상황이다. 두 권리가 양립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권리가 서로 다른 사람[→ A, B]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 주목 그런데 A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지상권,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므로 '혼동'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제한물권인 '지상권'을 소멸시켜야 한다[문단2-4].

3) 물권의 혼동을 이유로 A의 지상권이 소멸된다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갖고 있는 C는 담보를 잃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함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문제는 여기서 지상권은 '제삼자인 C의 권리의 목적'이라서, 그것을 소멸시킨다면 C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 주목 그래서 이렇게 소멸되어야 하는 제한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제한물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문단3-1].

문단 4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이 제삼자의 권리 목적인 경우**

1) 그뿐 아니라 법원은 소유권자나 제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 191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확대 적용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도 제한물권의 소멸을 막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이다.

◀> 맥락 짚기 단서 조항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소멸되어야 할 제한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 둘이 구분되지 않

는 것이라면 굳이 단서 조항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소멸되어야 할 제한물권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	----------------

2) 어떤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는 이가 소유권까지 취득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의 후순위 저당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유일한 저당권자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이가 손해를 입는다는 판단을 따르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이번에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하나의 물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선순위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 '혼동'을 해소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제한물권인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야 한다[문단2-4].

✖✖ 주목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후순위 저당권'을 가진 제삼자가 오히려 유리해진다. 제삼자가 유리해짐에 따라 '소유권, 선순위 저당권'을 가진 자가 오히려 불리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제한물권[→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소멸되어야 할 제한물권'인 경우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 경우 모두 제한물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유지시키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다르다. 후자의 경우 위의 상황처럼 제삼자가 아닌 '소유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분하여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소멸되어야 할 제한물권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제한물권을 소멸시키면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함 ∴ 제한물권을 유지시킴	제한물권을 소멸시키면 '소유권자' [→ 두 권리가 모두 귀속된 사람]의 이익을 침해함 ∴ 제한물권을 유지시킴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갑이 소유한 부동산 P와 관련해서 을과 병은 각각 제한물권 X와 Y를 갖고 있다. 갑은 P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단, X와 Y 외에 설정된 제한물권은 없다고 가정함.)

◀> 맥락 짚기 지문에서 주어진 예시들을 참고하여, <보기>의 상황에서 어떤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상황 : 물권의 혼동
- 문제 원인 : 중복되는 여러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됨
⇒ 물권의 양립 ×
- 해결방안[→ 민법 제191조 제1항] : 권리범위가 좁은 제한물권 소멸
- 예외[→ 단서 조항] : 소멸되어야 하는 권리가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멸 ×

➡ 부동산 P의 '소유권'과 '제한물권 Y'가 모두 병에게 귀속된 상황이므로, '혼동'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권리 범위가 좁은 Y가 소멸되어야 한다[문단2-4].

✖✖ 주목 다만 제삼자의 권리[→ 을이 가진 X]의 목적이 '소멸되어야 할 제한물권[→ Y]'이거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P]'이라면, 예외적으로 Y를 소멸시키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아래의 각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 X와 Y는 모두 P에 설정된 저당권이다.

※ 주목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물건들이 양립하려면 두 물권의 '보장 순위'가 달라야 한다[문단2-3]. 즉 X, Y 중 하나는 '선순위 저당권'이 된다. 또한 을이 가진 X의 목적이 P이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Y를 예외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을 수 없다[문단4-2].

➡ 가령 X가 후순위 저당권, Y가 선순위 저당권이라고 하자. 이때 Y가 소멸한다면 을이 이득을 보고 병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 경우에는 병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Y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 반대로 X가 선순위 저당권, Y가 후순위 저당권이라고 하자. 이때 Y가 소멸한다면 병이 손해를 보지도 않고[→ 원래 후순위 저당권이었기 때문이다.], 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자신보다 보장 순위가 낮은 권리가 소멸할 뿐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곧 Y를 소멸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칙에 따라 Y가 소멸된다.].

3) (나) X는 P에 설정된 지상권이며, Y는 X에 설정된 저당권이다.

➡ 이번에는 병에게 'X에 설정된 저당권[→ Y], 소유권'이 모두 귀속되는 상황이다.

※ 주목 다만 이 상황에서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혼동이 발생하려면, '하나의 물건'에 대한 두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문단1-2], Y는 X에 대한 권리고 소유권은 P에 대한 권리가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애초에 혼동도 발생하지 않는다.

4) (다) Y는 P에 설정된 지상권이며, X는 Y에 설정된 저당권이다.

➡ 이번에는 병에게 P에 설정된 지상권[→ Y], 소유권이 모두 귀속되는 상황이다. (가)의 경우와 비슷하게, 지문의 예시를 그대로 떠올리면 된다[문단3-2].

- P의 소유권 : 병
- P의 지상권[→ 제한물권] Y : 병
- Y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X : 을

➡ 이 경우에는 Y를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이다[문단2-4]. 다만 이렇게 소멸되어야 할 제한물권[→ Y]이 제삼자의 권리[→ 을의 X]의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Y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문단3-1].

∴ ④번 선지는 적절하다. Y를 소멸시키지 않는 것은, Y를 소멸시키면 제삼자인 을의 이득이 부당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다[문단3-3]. 즉 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Y를 소멸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22~26] 고전시가

(나) 「무인입춘축성가」

- 이광사 -

작품 평가

「무인입춘축성가」는 이광사가 백부인 이진유의 죄에 연루되어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었을 때에 창작한 작품으로 서사, 본사, 결사의 3단락으로 구분된다. 서사에 서는 당쟁으로 야기된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빼앗지 않고 유배를 보낸 임금의 은혜를 찬양하였고, 본사에서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의 기운을 임금의 성덕에 견주어 예찬하면서 태평성대를 소망하였다. 결사에서는 생전에 임금을 만나고자 했던 소원을, 꿈을 통해 이루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유배의 괴로움이나 백부의 죄에 연루된 억울함을 드러내기보다 일관되게 임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다. 이는 가문 전체에 닥친 참화로 인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갈등할 여력조차 없었던 작가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문의 종락 이전 부분은 임금의 은덕으로 극형을 면하고 유배객이 된 자신의 심정을 술화한 서사의 일부이고, 종락 이후 부분은 꿈에서 임금을 만난 감격을 드러내는 결사의 일부이다.

천지(天地)라 삼기시고 부모(父母)라 낳으시나

죽은 것 살리심은 남밖에 뉘 하실꼬

➡ '천지'가 [사람을] 만들고 '부모'가 [자신을] 낳았으나 '죽은 것 살리심'은 '남'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썩은 나무 꽃이 피고 해골에 새살 난 지

삼 년이 지나웁고 사 년에 미쳤구나

➡ '남'의 은혜로 죽은 것이 살아난 지 삼 년이 지나 사 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다.

➡ 앞 구절의 '죽은 것 살리심'이 '썩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해골에 새살'이 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작품이 작가의 유배 생활 중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자는 죽음을 면하고 유배지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게 된 것을 '죽은 것 살리심'이라 표현하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썩은 나무'에 '꽃이 핀 것'이나 '해골에 새살이 난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귀리죽 소금 반찬이 성찬(盛饌)보다 즐거울 제

백번 기운 현 배웃이 비단옷보다 더 좋을 제

변방(邊方) 사정 비참한들 저승 극락과 맞바꿀까

비바람 치는 토담집이 큰 집 호사 부럽잖네

➡ '귀리죽 소금 반찬', '백번 기운 현 배웃', '비바람 치는 토담집'은 화자가 변방의 유배지에서 견뎌야 하는 열악한 삶의 조건들이다. 그런데 화자는 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성찬', '비단옷', '큰 집 호사'와 비교하며 긍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변방 사정'이 아무리 비참해도 죽어서 가는 '저승 극락'보다는 낫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골쇄신한들 성은(聖恩) 추호나 갚으리오

➡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유배형을 내린 임금의 은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변방 유배를 죽음을 면하게 해 준 너그러운 처벌로 여기고, 유배에서의 비참한 삶일망정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화자의 태도는, 유배형을 내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종락)

개와 말이 어리석어도 주인 사랑할 줄 알고

해바라기 무지해도 해 향함을 시켜서 알리

➡ 사람보다 어리석다고 해도 알아서 주인을 따르는 '개와 말', '자절로 '해'를

향하는 '해바라기'를 통해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곤충 초목인들 나는 정성 금(禁)하리오

정성이 솟아나서 몽중(夢中)에 잠깐 피서

▶ 임금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임금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 난간 옥섬돌에 붉은 작약 번득이고

▶ 금으로 된 난간과 옥으로 만들어진 섬돌 등은 궁궐의 화려함을 과장한 표현이다. 즉 화자는 '몽중'에 본 궁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님[→ 임금] 계신 향안(香案) 전에 향로 연기 어리었네[→ 임금 주위에 향로 연기가 떠도는 궁궐의 모습]

궁궐의 북소리는 꽃 너머로 퍼지면서

물시계 물방울 소리 시간 감을 알리는데

▶ '북소리'와 '물시계 물방울 소리'는 꿈속의 궁궐 장면에서 생생함을 더해 주고 있다.

고아나 서자(庶子)가 부모 얼굴 처음 본다

궁곡(窮谷)의 병든 이가 일월(日月) 빛을 우러른 듯

용안(龍顏, 왕의얼굴)을 바라볼 듯 옥음(玉音, 왕의목소리)을 듣자울 듯

▶ 꿈에서 임금을 만난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부모가 없는 고아나 차별을 받는 서자가 부모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은 매우 감격적인 일일 것이고, 궁벽한 골짜기를 비추는 해와 달의 빛은 병든 이에게 차유의 서광이 될 것이다. 임금을 모시지 못하고 유배를 온 글쓴이는 자신의 처지를 부모 잃은 고아나 어둠에 묻힌 병자에 빗댄으로써 꿈속에서 임금을 만난 감동을 부각하고 있다.

일만 번 죽사온들 여한(餘恨)이 있으리오

즐겁기 하 극(極)하니 감격의 눈물만 쏟아지네

▶ 그리던 임을 만난 벅찬 감격에 눈물만 흐르는 상황이다.

오경에 말 울음소리 잠든 나를 깨우거니

▶ 잠에서 깨는 바람에 임을 만난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깨어난 후 옷소매에 어로향(御爐香, 임금이 쓰는 향로에 피우는 향의냄새)

이 남아 있네

▶ 임금을 만난 것은 꿈속의 일이므로 '어로향'이 남아 있을 리 없겠지만, 소매에 임금이 사용하는 향의 냄새가 남아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가시지 않는 꿈의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베개 위 맑은 눈물 천 줄기 만 줄기로세

▶ 꿈에서 깬 뒤에 베개 위를 보니 꿈속에서 임을 만난 감격에 겨워 흘린 눈물이 '천 줄기 만 줄기로' 흐르고 있다.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27~30] 현대시

(가) 「월훈」

- 박용래 -

▶ 작품 평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조로, 하지만 어떤 역동적인 서사도 없이 마치 그림 한 폭을 말로 묘사하는 것 같은 독특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침침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하여 판 구덩이 위에 약한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것)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 '침침 산중'에도 없고, '모랫둑'에서도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마을, '허방다리'를 들어내면 그제야 보이는 마을이 '여긴' 있단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

갱(坑, 광물을 파내기 위하여 땅속을 파들어간 굴) 속 같은 마을. 짝각, 해가, 노루꼬리 해[→ 해가 째다는 의미]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속도록 창문은 모과(木瓜)빛입니다.

▶ 광산의 굴 속 같은 마을은 깊은 어둠 속에 감춰진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해가 '노루꼬리'처럼 짧은 계절이라면 겨울이다. 깊숙이 감춰진 것처럼 외딴 마을에 긴 겨울밤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딴 마을에서도 또 '후미진 외딴집'에 켜져 있는 불빛이 창문을 통해 '모과빛'으로 노랗게 비치고 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노인의 단출하고 소박한 생활]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풀러 풀러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 아무도 찾아올 이 없는 긴 겨울밤, 노인이 짙단 흘러내리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에서 시방이 온통 적막한 분위기를, 그리고 외로운 노인이 자신을 둘러싼 바깥세상을 향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 짙단의 미세한 소리를 '짙오라기의 설레임'이라고 한 것에서, 노인의 내면이 어떤 기대나 바람 등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노인이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한다고 한 것과 결부하여 보면, 고독하게 살아가는 노인이 막연하게나마 삶의 온기를 일깨워 줄 무언인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밝은 기침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 노인의 '밝은 기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된 적막함이란 노인이 잠든 후의 고요를 말한다. 외로운 노인이 잠든 후의 적막 속에 들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은 앞서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노인의 속마음과 관련 있는 소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이 느끼는 고독감의 크기를 '벽이 무너지라고' 우는 귀뚜라미의 울음에서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테 달무리).

▶ 눈이 오는 것인지, 달무리가 진 것처럼 창호지 문살이 부영게 보인다. 고요한 밤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서정성을 눈과 달빛이 지닌 흰빛의 이미지가 극대화하고 있다.